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4. 9. 8.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6월 14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4년 6월 18일
- 다. 상정일자 : 제106회 임시회 제4차위원회 (2004. 9. 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 영 남

가. 제안이유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근무 추진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여, 토요일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0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안 제4조의2)

-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함(안 제14조의2)

○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2월)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일근무제를 폐지하여,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

(안 제13조, 제14조의2 및 제18조)

○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별표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2004.5.21일 서울시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개정조례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송부되고, 2004.6.24일 대통령령 제1843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토요일 휴무제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 및 토요일휴무 확대에 따른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

○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보완적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비밀엄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안 제13조에서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동절기(11월에서 2월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를 구분하지 않고 토요일 휴무제로 인하여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토요일 종무시간을 17시까지 실시하던 토요일일근무제는 폐지하고 토요일 종무시간을 13시로 개정함.

○ 안 제18조에서는 연가일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3년 미만은 1일, 3년 이상은 2일씩 줄여 토요일 휴무제 실시로 줄어드는 근무시간을 보충 하였고, 안 별표 3에서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 부칙에서 토요일 휴무제는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여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고, 안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연가일수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검 토의견>

○ 2004.5.21일 서울시로부터 송부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2004.6.24일 대통령령 제1843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개정하려는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토요일 휴무로 인한 주민 민원불편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과 이로 인하여 휴무토요일에 근무하는 민원업무 수행직원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개정하려는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일부 타 자치단체 소속공무원과 마포구 소속공무원 중에도 안 제4조의2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밀엄수와 안 제13조에 규정된 동절기 퇴근 시간 1시간 연장 및 안 제18조에 규정된 연가일수 단축 등에 대해서는 입법근거에 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토요일 휴무는 현재 월2회 실시하고 있지 않는가?

○ 답변요지(김영남 총무과장) : 구청장 방침으로 할 수 있는 규정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음.

○ 질의요지(신봉현 위원) : 서울시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가 어떻게 통과되었는가?

○ 답변요지(김영남 총무과장) : 비밀엄수 조항이 삭제 되었음.

○ 질의요지(유응봉 위원) : 공무원 임용 후 시보 기간과 시보도 공무원 연가 일수에 포함되는가?

○ 답변요지(김영남 총무과장) : 시보기간은 6개월 이며, 연가일수에 포함됨.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04.06.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근무 추진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골자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안 제4조의2)

-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함(안 제14조의2)

다.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2월)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
(안 제13조, 제14조의2 및 제18조)

라.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별표3)

3.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2001.1.29 법률제6400호) 제52조, 제59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1999. 12. 7 대통령령 제16,610호) 제9조, 제13조, 제15조, 제20조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 가. 서울특별시 인사과-8518(2004. 5. 21)호에 의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행정자치부 입법예고 2004. 5. 1 ~ 5. 11)과 연계하여 입법예고 생략
-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2004. 06. 07)
- 다.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4조의2 제목 및 동조제2항중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각각 “토요일휴무제”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
6월이상 1년미만	6
1년이상 2년미만	9
2년이상 3년미만	12
3년이상 4년미만	14
4년이상 5년미만	17
5년이상 6년미만	20
6년이상	21

「별표 3의 출산란중 일수 “1”을 “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설> 제4조의2(비밀엄수)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u> <u>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u> <u>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u> <u>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u> <u>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u>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4조의2 규정에 의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4조의2(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4조의2(토요일휴무제) ①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
6월이상 1년미만	7
1년이상 2년미만	10
2년이상 3년미만	13
3년이상 4년미만	16
4년이상 5년미만	19
5년이상 6년미만	22
6년이상	23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출산	배우자	1

비고 : (생략)

제18조(연가일수) ①-----
-----.

재직기간	연가일수
-----	3
-----	6
-----	9
-----	12
-----	14
-----	17
-----	20
-----	21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출산	-----	3

비고 : (현행과 같음)